

의안번호	2214086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6.2.3.
추계번호	25B613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2(한국수자원기술원)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관측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제3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감독함(제5항)	의무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6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의2(한국수자원기술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기

술원(이하 “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술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¹⁾에 따라 한국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출연하고 있음(2026년 기준 413억 3,900만원)

[표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출연사업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6 예산
홍수 및 수문조사 지원(5134-301)	수문정보인프라확충	·기후변화 및 한천환경 변화에 따른 수자원이용, 홍수피해방지, 수질관리, 홍수예보지원 수자원 분야 전국 하천 수문조사 실시	41,33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현재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원의 사업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1)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 또는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